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참조9)

2020. 2. 7.(금) 10:00

본 회 의 장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성 남 시 의 회

목 차

의회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발 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성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발의의원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연계함으로써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영 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존경하는 의장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마선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2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번째, 유증진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표준조례안에 맞게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12조제1항 중“제10조”를“제11조”로 한다
- 조례안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제16조”를 각각“제6조”로 한다.
- 조례안 제14조제1항 중“제12조”를“제13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제11조”를“제12조”로, “제12조”를 각각“제13조”로 한다.

- 조례안 제15조제1항 중“제8조”를“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제8조”를“제9조”로,“제9조”를“제10조”로 한다.
- 조례안 제17조제2항제1호 중“제8조”를“제9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제8조”를“제9조”로, “제9조”를“제10조”로 한다.

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두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0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번째, 정 윤 의원 등 스물 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와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상 지원대상이 중복 되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지원 제외대상의 차이 등을 정비하였으며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

- 제4조제2항 중

“조합설립추진회”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마 선 식